

# 낙농진흥회 정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구조의 개선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 낙농진흥회」가 99.1.1일 설립되었다.  
또한 지난 98.12.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정관을 전국의 낙농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린다.

- 낙농진흥회 사무국 -

## ※제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진흥회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구조의 개선 및 품질향상을 통하여 우리나라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둔다.

### 제4조(사업 및 업무의 범위)

① 진흥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사업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2.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4.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5. 원유의 계약생산 및 계약공급에 관한 사업
6. 원유의 가격 결정에 관한 업무
7. 집유조합 지정 및 집유권역 결정에 관한 업무
8. 유제품의 수매·비축·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사업
9.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촉진·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
10. 원유·유제품의 구입·판매등에 관련된 도매업, 위·수탁업, 중개업 및 서비스업
11. 낙농기술 및 원유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업무
12. 낙농관련 연구용역사업

- 1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1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 15.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16. 제1호 내지 제15호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업무
  - 17.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업무
- ② 진흥회는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정부 및 공공단체, 금융기관 및 기타 법인으로 부터 필요한 자금의 차입
  - 2. 회원의 산하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진흥회업무와 관련되는 규정 통보
  - 3.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제품의 비축·판매 등에 따른 사업손실 보전자금등의 조성·운영

**※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진흥회의 회원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 라한다.),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등의 낙농관련단체로 한다.

**제6조(가입)**

- ①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단체가 진흥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부등본
  - 2. 법인 인감증명서
  - 3. 정관
- ② 진흥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자격유무를 심사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입을 승낙한 때

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회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 ① 진흥회의 회원은 정관과 제규정 및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동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진흥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임원의 선임 및 피선거권
  - 2. 총회의 의결권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 ①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해산
  - 2. 파산
  - 3. 제명
- ② 진흥회는 회원이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회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및 직원 ※**

**제10조(임원의 정수)**

- ① 진흥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15인 이내와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는 진흥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매사 업년도중 1회이상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회장유고시에는 총회를 구성하는 법인의 대표 자중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비, 수당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이사가 아닌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임기로 하며, 그 선임은 결원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결산기의 최종월 이후에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농림부축산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1. 축협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축협중앙회 임직원 1인, 집유조합장 3인
  2.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추천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원 1인, 낙농가 2인
  3. 한국유가공협회가 추천하는 한국유가공협회 임원 1인, 유가공업체 대표 3인
  4. 총회에서 선임하는 낙농관련학회 인사 1인, 소비자단체 인사 1인
-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장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단체에서 각 1인을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미성년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자

### 제16조(임원의 해임)

- ① 진흥회의 임원은 다음의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진흥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2. 업무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② 진흥회의 임원은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임원에서 해임된다.
1. 임원을 추천한 단체가 해산하거나 청산중일 때
2. 임원이 그를 추천한 단체에서 퇴임, 퇴직 또는 탈퇴하였을 때

**제17조(대표권 제한)**

회장의의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총회의결 없이 진흥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8조(집행간부)**

- ① 진흥회는 집행간부 1인을 상근으로 두며, 그 명칭은 전무로 한다.
- ② 집행간부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집행간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집행간부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 ④ 집행간부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의 업무를 통리 한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진흥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20조(직제와 급여)**

진흥회의 직제와 집행간부 및 임·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 제4장 총 회 ※**

**제21조(총회)**

- ① 진흥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연도 마감후 2개월이 내에 회장이 소집 한다.

**제23(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어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7일 이내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소집통지)**

총회소집통지는 개최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의 정족수의 미달로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할때에는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총회는 소집시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전원이 동의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회원의 전원 참석으로 개회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의 해임결의 또는 회원의 제명결의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는 참석하지 못하고 의결권도 없다.
- ② 회원은 총회에 불참할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회장 이 미리 발급한 위임장을 총회 개시전에 제출하여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회원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 제27조(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을 포함한 2인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 제5장 이사회와 자문위원 ※

## 제28조(이사회)

- ①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29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는 개회 7일전 까지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진흥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 회부한다.

## 제32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3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33조(자문위원)

- ① 진흥회는 원유 및 유제품 수급, 원유 및 유제품의 품질, 영양 및 질병, 경영 및 환경분야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술과 경영관련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계 및 산업계 등에 추천 의뢰하여 10명 이내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재산 및 수입원)**

- ① 진흥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회원 또는 정부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진흥회의 수입은 다음사항으로 한다.
  1. 원유판매 수익금 및 수입수수료
  2. 수매·비축한 유제품의 판매수익금
  3. 정부와 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4. 기타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

**제35조(재산의 운용 및 관리)**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운용과 관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기본재산을 매각, 양도, 임대, 교환 또는 담보등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에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경비)**

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8조(회계연도등)**

진흥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하며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다.

**제39조(사업계획 및 결산)**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당해연도의 결산

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특별회계의 설치)**

진흥회는 특정한 자금을 조성·보유·운영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잉여금 처분)**

-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결손을 보전하는데 우선 충당하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기본재산의 2분의 1에 달할때까지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사업확장 및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본을 조달하거나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분의 2이내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3. 고정부채의 상환에 대비하기 위해 잉여금의 10분의 2이내에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결손에 대비하여 잉여금의 10분의 1이내에서 결손보전적립금으로 적립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예금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결손보전)**

진흥회는 회계연도말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결손보전적립금, 감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정의 제정 및 업무위탁※

제43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관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진흥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 또는 폐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유조합지정 및 집유권역 결정에 관한 사항
3. 원유·유제품의 수매·비축·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사항
4. 원유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5. 원유계약생산 및 계약공급에 관한 사항
6. 원유공급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7. 집유비용의 산정기준과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
8. 원유의 공정배분과 그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기타 진흥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영 규정

제44조(업무위탁)

① 진흥회는 제4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계약낙농가와와의 원유생산계약에 관한 업무
2. 계약낙농가와와의 원유생산계약 내용의 변경등에 관한 동의
3.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집유 및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의 원유구입 업무
4. 진흥회가 정한 원유판매가격과 수요자별 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에게의 원유공급
5. 원유집유조합이 계약구입한 낙농가에 대한 원유구입대금 정산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진흥회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계약

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진흥회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진흥회는 위탁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5조(공고의 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축산관련전문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6조(정관의 변경)

진흥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자)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설립을 위하여 하기명의 설립자는 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1998년 12월 29일에 각각 기명날인 한다.

■ 설립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박 순 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번지 축산회관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 남 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31-1번지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김 영 진